

2021년 제9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 
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 
공포한다.

2021년 9 월 13 일

여 수 시 장 권 오 봉



여수시 규칙 제777호

붙임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여수시 규칙 제777호

## 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「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」”을 “「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」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전문기술인 중 토목·기계분야 초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야 한다.

제6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소켓트”를 “소켓”으로, “넙쁘르”를 “니플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시공의 조잡또는 조잡의”를 “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할”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0일이내에”를 “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##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(제7조 관련)

항 목	기 준	배점	평점	
<b>총 계</b>		<b>100</b>		
1. 시공능력	<b>합 계</b>	<b>25</b>		
	공고일기준 최근3년간 상수도 분야 실적(전문건설협회발급)	20억 이상	25	
		15억 이상~20억 미만	23	
		10억 이상~15억 미만	21	
		10억 미만	19	
2. 기술능력	<b>합 계</b>	<b>25</b>		
	<b>소 계</b>	<b>10</b>		
	시공기술자보유(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)	기준보유 (2명)	10	
	시공기술자의 경력(합산) (기술인협회발급)	20년 이상	15	
		15년 이상~20년 미만	13	
		10년 이상~15년 미만	11	
5년 이상~10년 미만		9		
5년 미만	7			
3. 경영상태	<b>합 계</b>	<b>20</b>		
	<b>소 계</b>	<b>10</b>		
	부채비율(부채총계/자기자본) (전문건설협회발급)	30% 미만	10	
		50% 미만	9	
		75% 미만	8	
		100% 미만	7	
		100% 이상	6	
	<b>소 계</b>	<b>10</b>		
	유동비율(유동자산/유동부채) (전문건설협회발급)	200% 이상	10	
		150% 이상	9	
100% 이상		8		
50% 이상		7		
50% 미만		6		
4. 보유장비	<b>합 계</b>	<b>15</b>		
	"별표 1의 보유 장비"및 추가장비 각 1점 가산	"별표 1"의 보유장비	<b>10</b>	
		래머(80kg 이상)	1	
		콤팩터(1.5톤 이상)	1	
		포장절단기	1	
		발전기(5kw 이상)	1	
		누수탐지기	1	
<b>소 계</b>	<b>15</b>			
5. 면 접	○ 상수도 관련지식 습득 여부(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)	<b>10</b>		
	○ 적절한 자재사용 및 방법 등 시공능력 여부	5		
6. 행정처분 감 점	- 대표자 개인 국세·지방세 체납여부: 감점 5점 - 최근 1년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제재처분: 1회당 1점, 최고 감점 3점 (전문건설협회 발급)			

〈비 고〉

1.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, 기술능력, 경영상태 장비 및 면접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고, 재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하며, 모든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.
2. 면접은 신청자(대표자) 또는 선임기술자중 1인이 참여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<b>수도급수공사대행업 지정(변경) 신청서</b>					
업체명	상 호 명 (법인명)		사업자(법인) 등록번호		
	성 명 (대 표 자)		생년월일		
	주 소				
	연 락 처	대표전화		휴대폰	
소재지	사무실	(면적: m <sup>2</sup> )			
	창 고	(면적: m <sup>2</sup> )			
시 공 기 술 자	성 명	생년월일	고용연월일	상수도 업무 근무연수	소지자격증
변 경 내 용	변경 전			변경 후	
변 경 사 유					
<p>「여수시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」 제3조 및 제18조에 따라 여수시 상수도 대행 업체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지정(변경)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고인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span></p> <p><b>여 수 시 장</b> 귀하</p>					
구 비 서 류	신청인 제출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정신청 시 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·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. 2.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.(접수 시 원본 제시) 3. 사무실, 창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. 4.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사진대지 각 1부. 5.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증명서(금액 및 건수) 각 1부. 6. 경영상태(부채비율, 유동비율)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. 7.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.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청 시 - 변경관련 서류			

[별지 제6호서식]

## 현 장 대 리 인 신 고 서

영 업 소 재 지 :

상 호 :

시공기술자성명 : 생년월일 년 월 일

자 격 번 호 : 제 호

위 사람을 「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규칙」 제10조제5호에 따라 본 업소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대 표 자 (인)

여 수 시 장 귀하



자

제11조(자재) 급수공사용 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1. 파이프, 수도꼭지, 밸브, 지수전, 소켓트, 유니온 및 넙뿌르 등은 KS 표시품으로 사용
2. (생략)

제12조(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)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.

- ② (생략)

제18조(대행업자의 신고사항)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11조(자재) 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-- 소켓----- 넙플 --  
-----
2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명령) ① -----  
-----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할 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대행업자의 신고사항) --  
-----  
-----  
---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